

(재)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7일) 상정

·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7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최인용)

□ 개정이유

- 복사골문화센터내 청소년수련관의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재단의 취약부분인 행사기획, 조사연구, 영사관리 등에 대한 인원 보강 필요
- 오정구청 신청사내 별관 문화공간(오정아트홀)을 부천문화재단에 위탁 관리 할 계획임.
-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재단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정원을 35명에서 45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동의요구내용

-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 35명 이내를 정원 45명 이내로 인원증원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함

○ 정원증원사유

· 총 인원증원 : 10명

- 부천문화재단 인원 보강 : 4명(영사, 수입, 공연기획, 정책조사연구)

- 오정아트홀 : 4명(무대기계, 음향, 조명, 대관)

- 청소년수련관 : 2명(청소년지도사)

□ 관련규정

○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6조(사무부서) 제2항

○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정관 제34조(정관의 변경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청소년지도사가 하는 일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로 시설 및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당장 채용해야 하는 사항인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작년 12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정원이 5명이나 현원이 3명으로 요건을 충족 해야 하므로 2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각 시설별로 중복되어 개최되는 행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명, 전기, 음향등의 인원은 센터내에 팀을 구성하여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(재)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

제출년월일 : 2003. 03. 8

제출자 : 부천시장

의안번호	제104호
의결연월일	2003.3.19 (제103회)

□ 제안사유

- 복사골문화센터내 청소년수련관의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재단의 취약부문인 행사기획, 조사연구, 영사관리 등에 대한 인원 보강 필요
- 오정구청 신청사내 별관 문화공간(오정아트홀)을 부천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할 계획임
-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재단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여 정원을 35명에서 45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

□ 동의요구 내용

-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 35명 이내를 정원 45명 이내로 인원증원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함
- 정원증원 사유
 - 총 인원증원 : 10명
 - 부천문화재단 인원 보강 : 4명(영사, 수입, 공연기획, 정책조사연구)
 - 오정아트홀 : 4명(무대기계, 음향, 조명, 대관)
 - 청소년수련관 : 2명(청소년지도사)

□ 관련규정

-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6조(사무부서) 제2항
-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정관 제34조(정관의 변경)

부천문화재단 정관 제 호

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정관중개정안

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정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중 “35명”을 “4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사무부서)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되 정원은 <u>35명</u> 이내로 한다.	제29조(사무부서) ----- ----- ----- <u>45명</u> -----
	부칙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